

業 務 報 告

실장	이사장	결 재
구행진	06/29 박호국	

제 목 : 2016년도 제2회 청렴 옴부즈만 회의 개최 결과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단 행정을 위하여 운영중인 『청렴옴부즈만』의 2016년 제2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06. 27.(월) 10:30~
- 장 소 : 감사실 회의실/인근 식당
- 참 석 : 9명(청렴옴부즈만 3명, 감사실장 외 5명)

□ 회의결과 : 세부사항 불임참조

- 2016년 상반기 『청렴옴부즈만 제도개선 제언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사전컨설팅』 등
 - ▷ 퇴직임직원 윤리규정 신설에 따른 제언 ⇒ 취업제한 제재 조항 신설 등
 -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검토 등



청렴옴부즈만 제2회 정기회의

□ 행정사항

- 심의수당 및 간담회 경비 지급의뢰 : 재무회계팀
 - ▷ 소요경비 : 금363,000원(심의수당 금300,000원 / 간담회 금63,000원)
 - ▷ 예산과목 : 행사운영비(청렴옴부즈만 운영 등 청렴시책 추진 등)

불임 : 1. 2016년 제2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결과
2. 참석자명부 및 수당수령증. 끝.

2016. 6. 27.

위 보고자 감사실 전기6급 윤성윤 윤성윤

‘16년 제2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결과

- 일시/장소 : 2016. 6. 27.(월), 감사실 회의실
- 참석자 : 청렴옴부즈만 위원 3명, 감사실 직원 5명
- 안건 : 제1차 회의 제도개선 제언사항 진행경과 보고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신설(안)

□ 회의내용

○ 제1차 회의 제도개선 제언사항 진행경과 보고

-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핸드볼선수단 관리지침 등에 대한 청렴옴부즈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사규를 개정·신설한 사항이며, 특히 위원들의 규정 검토활동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한 규정 보완사항임.

※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은 회의 개최 전 개정 등의 사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순번	1차 회의 제언사항	비고
1	□ 실업팀 운영 투명성 강화 요구 ○ 제언내용 ① 공단이 운영하는 실업팀의 선수선발 및 운영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수선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토록 요구 ○ 결 과 - 핸드볼선수단 관리지침 제5조의1(선수선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임명사항, 수당지급사항, 심사내용 등	수용 (개정완료)
2	□ 광안대로 시설물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건의 ○ 제언내용 ① 자문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 위촉 방식을 비공개에서 공개방식으로 변경 요구 ② 자문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 부패행위 발생시 해촉 관련 규정 신설 요구 ○ 결 과 - 비공개 위촉방식 ⇒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모집으로 개정 - 해촉 관련 규정 신설(제2조제6항)	수용 (신설완료)

순번	1차 회의 제언사항	비고
3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신설(안) ○ 제언내용 ① 공직자의 부패예방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사전차단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문제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 해수인입시설 긴급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16.1.8)-음부조판 참석 ② 위원회의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수 심의 사안 등에 대한 해촉, 회피, 기피 규정 신설 요구 ③ 내규(안) 중 구성위원 선정에 대한 임명권자 및 심의의결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선 요구 ○ 결 과 -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8조) 및 심의의결(9조) 조항을 신설.	수 용 (개정완료)

○ 제2차 회의 논의사항

- 임직원행동강령 시행내규 개정(안)

① “사적 접촉 제한 예외 사유” 조항 신설

(취지)

제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4.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 접촉한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②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문책성 전보” 조치 의무화

(취지) 비위행위자 등에 대한 엄정조치로 부패행위 재발 방지

제24조 (징계)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르되,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건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3조 별표9의1’의 처리기준에 따르고, 주의·경고 이상 제재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문책성 전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로 한다.

③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청렴교육” 기간 구체화

(취지) 비위행위자에 대한 일정기간 내 교육 의무화를 통한 재발 방지

제26조의 제3항 “이사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렴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하여야 한다.”를 “이사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 처분 후 3개월 이내 전문기관 등을 통한 청렴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신설

(취지) 퇴직임직원 윤리규정 마련을 통한 사전 부패 소지 예방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정 2016. .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직 후 다른 업체에 소속되거나 다른 업종 및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지켜야 할 윤리기준 등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윤리) ① 퇴직임직원은 공단의 설립이념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신이 소속한 기업 등(이하 “소속기업 등”이라 한다)에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퇴직임직원은 공단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등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퇴직임직원은 공단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임직원은 공단 재직 당시의 직위나 취득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직무수행 윤리기준

제3조 (직무수행의 기본기준) ① 퇴직임직원이 공단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단의 업무 담당자와 금전적 이해관계 또는 혈연 등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를 소속기업 등에 미리 알리고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퇴직임직원은 공단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기업 등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그 결과를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퇴직임직원은 소속기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과의 연고를 선전 또는 이용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문서 및 정보 반출 금지) ①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임직원은 외부 공개용으로 작성된 문서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문서를 제외한 일체의 문서 및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퇴직임직원의 부당행위 금지) 퇴직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업무처리 또는 정책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공단의 사업추진계획 및 의사결정방향 등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기타 퇴직임직원의 활동이 공단의 업무처리 및 정책 결정 등 공익적 활동과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제6조 (퇴직임직원의 사적접촉 제한) ① 퇴직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단 임직원과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퇴직임직원은 공단 재직 당시 공식적으로 관여한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단 임직원과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퇴직임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도박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골프, 식사, 향응, 여행, 선물 등을 의미한다.

제3장 윤리기준의 적용

제7조 (퇴직임직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및 제재) ① 이사장은 외부용역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단 퇴직임직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 퇴직임직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 제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 일부터 시행한다.